

◆ 은평구고시 제2026-71호

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1982-168호(1982. 4. 26.)로 최초 결정된 갈현동 333-9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결정(폐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을 결정(폐지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8월 6일

은 평 구 청 장

1. 결정취지

용도폐지 되어 미사용 중인 (구)구산가압장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를 폐지함

2.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결정(폐지)

○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결정(폐지)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폐지	12	수도공급설비 (가압장)	갈현동 333-9	316	감)316	-	서고168 (1982.04.26.)	

○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(폐지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결정사유
12	수도공급설비 (가압장)	· 수도공급설비 폐지	· 용도 폐지된 가압장의 도시계획시설 폐지

3. 관계도면 : 붙임참조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은평구청 공간계획과(☎02-351-7407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< 붙임 >

